



제41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명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시 과태료 감면 등〉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427호)

2024.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 30.
3. 회 부 일 : 2024.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9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①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거나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를 하여 원상이 회복되거나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투자권유 대행인,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신용카드모집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과태료를 감경(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금융소비자가 제4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거나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청약철회·계약해지로 원상이 회복되거나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조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⑥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 제6항----- ----- -----.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²⁾이 일반금융소비자³⁾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19조).⁴⁾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 2)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정의하고, 업종별로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로 구분하고 있음(법 제2조).
- 3)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법 제2조제10호), 전문금융소비자란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함(법 제2조제9호).
- 4)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의 손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⁵⁾ ②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할 수 있도록 하며⁶⁾ ③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⁷⁾ ④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⁸⁾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9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법 시행령 제51조([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설명의무(법 제19조제1항·제2항) 위반 시 법인에는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3,500만원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고시)」 [별표 3]은

-
- 6)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8)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 금액의 20%~100% 수준에서 예정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①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이 없는 경우 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면제·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음.

□ 참고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⁹⁾

□ 개정안은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로 원상이 회복되거나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②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세한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또는 신용카드모집인인 경우, 과태료

9) 다만, 최근에도 2021년 3월 25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설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당시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를 면제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현행법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는 한편, 해당자에 대하여는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장기간의 소송,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영세한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또는 신용카드모집인이 과태료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손해배상 시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발생시킨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성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동일 위반행위(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감경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은 24가지 위반행위(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의무(제19조) 위반 시 모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설명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및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면제·감경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행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일반적인 감경·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① 현재 금융관련법령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산정체계와 다른 예외를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② 과태료를 감경·면제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¹⁰⁾ ③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태료와 별개의 사항인 손해배상여부 및 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면제·감경하면 법률 준수

10)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경우, 과태료보다는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법 제57조) 부과 여부 및 규모가 쟁점이 되고 있음.

유인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금융감독원은 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여도 금전 손해배상만 하면 과태료를 면제·감경받을 수 있어 법률 준수 유인이 약화할 우려가 있고 ②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하여¹¹⁾ 법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③ 면제·감경 대상에 영세업자로 볼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 제외되어 있어 형평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첫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영세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의 과태료를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감경의 가능성과 다른 금융관련법령 위반자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06

11) 예컨대,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거쳐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감경이 가능한지, 손해를 전해 배상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감경이 가능한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